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9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【집행부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2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6.

기획재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)
- 제출일자: 2025. 1. 23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. 23.(목)
- 검토기간: 2025. 1. 24.(금) ~ 1. 31.(금)

2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(안 제4조제2항)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제한 한도 삭제(안 제4조제5항)
-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5조제1항)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포함(안 제7조제2항제5호)
-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(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)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5조 및 제16조
 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의안번호 제2023-793호, 2023. 10. 23.)
 -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1366(2024. 4. 4)호 및 市 예산담당관-4251(2024. 4. 4)호 관련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협조 요청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입법예고(2024. 12. 2.~12. 23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협조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4조제2항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규모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적립기준을 완화하였고,
 - 안 제4조제5항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사용가능 제한 비율을 삭제하였으며.
 - 안 제5조제1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도록 명시하였음.
 - 안 제7조제2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으며,
 -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자료에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을 포함하고, 연도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음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완화하고 국민권의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 안 제4조제5항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제한 한도 삭제에 대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의안번호 제2023-793호, 2023. 10. 23.)

- ①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
- ②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포함
- ③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

□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1366(2024. 4. 4.)호 및 市 예산담당관-4251(2024. 4. 4.)호 관련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협조 요청

순세계잉여금을 ①법정 의무사항 정산, ②채무 상환, ③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우선 사용하여 효율적 활용 도모

【현 행 조 례】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3. 21.)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%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%를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 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
 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
 3.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 4.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
 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 6.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- ⑤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 통합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제6조(이자) ①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구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 3.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 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 5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관: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장
2. 통합기금출납원: 통합기금 업무담당 팀장

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,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